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에 대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의 확대(안 제3조)
 - 적용범위 추가 :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도의회 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
-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확대(안 제7조)
 - 사업 추가 : 5개호→ 8개호
- 6.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시찰

7.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,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
8. 그 밖의 직원 복지·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에 대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된 내용은

후생복지의 적용범위를 공무원에서 도의회의원,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며,

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공무원 포상 등의 후생복지사업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임.

금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근거 조례 없이 시행되고 있는 도의회의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지포인트 등 후생복지제도의 적용,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및 퇴직 공무원 포상이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